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718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2일
제출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가. 의회 규칙 내 서울특별시의회 조직개편(2023.1.16.)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토론회 신청 주체로 교섭단체가 편입(2023.1.5.)되어 토론회 개최 등 지원에 관한 소관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교섭단체 토론회 지원 부서에 관한 신설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3조
- (2)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예산정책담당관”을 각각 “재정분석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지원담당관”으로 한다.

4. 신청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정책지원담당관

제2조(「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책기획담당관실”을 “정책지원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